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7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임광현・이기헌・박홍배

정일영 · 이건태 · 한민수

이정문 · 임호선 · 노종면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 '20세 이하'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.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,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때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의 부양 부담이 커진 상황임.

이에 기본공제 항목에서 '20세 이하' 자녀를 '25세 이하' 자녀로 연 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"20세"를 "25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	제50조(기본공제) ①
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	
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	
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	
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	
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	
에서 공제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거주자(그 배우자를 포함한	3
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와	
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	
양가족(제51조제1항제2호의	
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	
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	
다)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	
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	
이하인 사람(총급여액 500만	
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	
부양가족을 포함한다)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	나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(이하 "입양자"라 한다)로서 20세 이하인 사람.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배우자를 포함한다.

다. ~ 마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<u>25세</u>
구. ∼ 마. (현행과 같음)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 ②·③ (현행과 같음)